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삼성 KODEX Brazil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 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 : 2012.07.25 – 2012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 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증개업자 : 신한금융투자, 유진투자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10.04	제48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)	①-1. 투자 운용인력의 변경	①-1. 투자 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)
2012.12.17	제38조(투자신탁보수)	④-1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3.5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2.0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 분의 1,000 분의 2.0	④-1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2.5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5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 분의 1,000 분의 0.5

		0.6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4	0.4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3
	제40조(투자신탁의 해지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신탁계약을 얻어 이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3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 경우 이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3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</p>

		<p>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</p> <p>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</p> <p>3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</p> <p>④ 투자신탁은 추가로 설정(모집) 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</p> <p>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다만, 일”이라 한다)로부터 1월 전 설정(모집)에 당해 신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</p> <p>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⑦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</p>	<p>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</p> <p>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다만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⑥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</p>
--	--	---	---

			약의 해지사 유, 해지일 자,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 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 거래소에 공 시하고 제 48 조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2012. 12. 17	제48조(수 익자에 대 한 공시 등)	③제 2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자산 보관·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를 통해 여 직접 또 는 전자우 편의 방법 으로 교부 하여야 한 다.	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자산보관 · 관리보고 서를 교부하 는 경우 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, 예탁결 제원을 통해 여 직접 또 는 전자우 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 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 인명	계약 기간	감 사 보 수	계약 방 법
안진회계 법인	1 년	27 만 5 천원	서면 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RESTRICTED - PUBLIC_HSS FS SEL

- 부합함
 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 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 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 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 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